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12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1992年 12月 15日(火) 午後4時

場 所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 1.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

審査된案件

- 1.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 1 面

(16時47分 開議)

○ **委員長 金樂雲** 成員이 되었으므로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 **委員長 金樂雲** 今日 會議는 지난 11月25日 本 監査 特別委員會가 構成된後 監査 計劃에 依據 12月1일부터 12月3日까지 3日間 實施한 平昌郡에 對한 行政事務監査 實施 結果에 對한 報告書를 採擇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리면, 本 特委에서는 監査報告書를 採擇하여 本會議에 上程하게 되며 本會議에서 議決된後 平昌郡으로 通報하게 되어 있습니다.

- 1. '92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6時48分)

○ **委員長 金樂雲** 議事日程 第1項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의件을 上程합니다.

○ **委員長 金樂雲** 本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는 專門委員室에서 委員長과 協議 作成한 報告書 입니다.

專門委員 報告書에 對한 內容을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辛敦善** 입니다.

平昌郡議會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特別委

員會 監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特別委員會는 지난 11月25日 第12回 平昌郡議會 第1次 本會議에서 構成되어 12月 1日부터 12月3日까지 平昌郡에 對한 監査를 實施하였습니다.

監査는 各室課所에 監査 要求資料와 現況 報告를 聽取한뒤 實施 하였으며, 監査實施 機關은 平昌郡議會 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關한 條例 第5條에 의거 企劃室, 文化公報室, 內務課, 새마을課, 財務課, 社會課, 環境保護과, 家庭福祉課, 産業課, 地域經濟課, 畜産課, 山林課, 建設課, 都市課, 民防衛課, 保健醫療院, 農村指導所와 蓬坪面, 龍坪面 順으로 監査를 實施하였습니다.

다음은 監査結果를 報告 올리겠습니다.

所管別 主要監査 內容은 企劃室의 郡守包括事業의 事業 選定과 過年度 事業의 過多한 移越로 入하여 移越事業에 對한 豫算執行 計劃에 蹉跌을 가져온 問題點等 5件이며, 文化公報室은 '93魯城祭行事 計劃및 執行 豫算事項等이며, 內務課는 平昌獎學會 構成經緯와 獎學金 造成 方法等에 對한 1件이며, 새마을課는 道民體典 出戰經費를 豫備費에서 執行한 經緯等 5件입니다.

財務課는 '91決算檢査시 無豫算 執行한 2억8천만원의 經緯를 追窮한 것과 關聯하여 4건, 社會課는 生活保護對象者 選定過程에서 漏落者나 特惠者 選定에 對한 追窮等 2

件, 環境保護課는 松魚養殖場으로 因하여 水質 汚染에 對한 現況및 對策等 1件, 家庭福祉課는 平昌郡 公設墓地 推進 經緯및 選定 背景과 住民 同意에 對한 앞으로의 對策等에 對하여 監査를 實施한 이의 1件, 産業課는 農村振興地域에 對한 弘報等 推進過程外 6件을 監査하였으며, 地域經濟課는 注油所, 가스販賣所의 認許可 基準 現況 販賣現況, 休業中인 業所等 管理方案外 4件 畜産課는 松魚養殖場으로 因한 水質汚染의 根本的인 對策및 向後 計劃外 4件, 山林課는 造林事業中 速成樹 植栽로 因한 經濟成間伐作業 人夫賃 作業等の 問題點, 向後對策外 2件, 建設課는 平昌 排水펌프장 再移月事業과 設計變更 內容및 遲延事由와 向後對策等外 2件, 都市課는 住宅融資金 回收現況에 對하여 未收者에 對한 對策 追窮等 5件, 民防衛課는 邑面 配置 消防官의 消防車 作動 미습등 問題點을 指摘하였고, 此外 1件을 指摘하였으며, 保健醫療院은 醫療院 運營實態및 樹枝分析에 對하여 監査를 實施하였고 農村指導所는 면에 配置된 大農民 相談要員의 勤務與件 造成과 우투과이 라운드에 帶費한 經濟性 作目開發等 地域 實情에 맞는 밭作物 指導計劃에 對하여 監査를 實施하였으며, 蓬坪面에 對하여는 면의 事業推進過程에서 民願을 誘發한 事項外 11件이며, 龍坪面은 面長 包括事業의 選

定과 施行하는 過程等 10件으로서 總87件에 對하여 監査를 實施하였습니다.

다음은 監査 指摘事項에 對한 施政 및 處理 要求事項을 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監査 指摘事項으로 定額補助團體에 對하여 定額補助外에 卹補助金에서 隨時 散發的으로 豫算을 支援한데 對하여 向後 定額補助外 豫算執行을 止揚할것외에 11件에 對하여 指定 및 施政을 要求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다음의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議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建議事項은 '92年 行政監査시 大部分 問題點으로 導出된 事項으로서 郡守에게 建議하여 處理하도록함으로써 鎮靜한 郡民을 爲한 行政이 되고자 熟考하여 作成하였습니다.

建議內容은 地方自治의 참뜻은 地域間 均 衡發展에 있으며, 中長期 開發부터 모든 地域開發事業은 一部地域에 偏重되지 않도록 郡의 企劃部署에서 事前 調整을 要求하는 等 18件을 建議하였습니다.

項目別 建議內容과 其他 상세한 事項은 由 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平昌郡議會 '92 行政事務監査 結果를 簡略히 報告드렸습니다.

○ [redacted] 委員 여러분!
報告書에 對하여 質疑와 討論하실 委員 各

십니까?
(없다고 하는이 있음)

○ [redacted]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 [redacted] 表決하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에 對하여 原案대로 採擇코자 委員 여러분의 意見을 묻습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는이 있음)

○ [redacted] 異議 없으시면 宣布하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redacted] 委員 여러분!
지난 11月25日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가 構成된後 오늘 이時間까지 會議進行과 監査 進行에 協調하여 주신데 對하여 委員長으로서 깊은 監査의 말씀을 드리며,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行政事務監査 特別委員會 第2次會議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56分 散會)

結 果 報 告 書

1992年 12月 15日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p>目 次</p> <p>1. 監査의 目的</p> <p>2. 監査期間</p> <p>3. 監査實施機關 및 對象事務</p> <p>4. 監査實施 經過</p> <p>가. 監査實施機關</p> <p>나. 監査班 編成</p>	<p>다. 監査日程</p> <p>5. 監査結果</p> <p>가. 主要監査實施 內容</p> <p style="padding-left: 2em;">○ 所管別 實施內容</p> <p>나.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p> <p>다. 建議事項</p> <p>라. 其他事項</p>
--	---

行 政 事 務 監 査 結 果 報 告 書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의 보다 효과적이고 올바른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2. 監査期間

○ 1992.12.1(화)-1991.12.3(목) [3일간]

3. 監査對象機關 및 對象事務

○ 監査대상기관: 평창군(본청, 사업소, 읍면)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

(고유사무 + 단체 위임사무)

4. 監査實施 經過

가. 監査실시기관: 평창군

(본청, 사업소, 읍면)

나. 監査반 편성

○ 위원회명: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운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 사: 주태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 원 : 이치옥, 이상훈, 박용태, 박문춘, 김종영

- 보조직원:전문위원 신 교 선
- 의사계장 함 경 호
- 직 원 함 인 주
- 기 록 원 심명희,이은하

다. 감 사 일 정

月 日	對 象 機 關	監查場所	監 查 方 法	備 考
12월 1일 (화) 10 : 00	평창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 산업과,	평창군청 대회의실	○ 현황보고청취 ○ 자료제출요구 ○ 질의및 답변	
12월 2일 (수) 10 : 00	평창군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평창군청 대회의실	○ 현황보고청취 ○ 자료제출요구 ○ 질의및 답변	
12월 3일 (목) 10 : 00	읍면 (봉평면, 용평면)	면소회의실	○ 현황보고청취 ○ 자료제출요구 ○ 질의및 답변	

5. 監查結果

가. 주요감사 실시내용

- 소관별 실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 92년도 문화제 보수실적 및 평창문화원 활동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사항 	
(내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장학회 구성경위, 장학금조성방법, 장학회 운영및 문제점 ○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 발령, 읍면직원 결원 보충, 읍면에 여직원 집중 배치등에 대해서 추궁 	
(새마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경위추궁 ○ 용산2리 진입로포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용평리조트에서 완벽한 사업을 하지 않는등 향후 군의 대책등 추궁 ○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상당수가 부실시공 되었다고봄. 향후 부실시공방지와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주민의 화합과 애향심고취를 위한 마을도급사업으로 시공할 용의에 대하여 추궁 ○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의 추지및 현재추진경위 ○ 백옥포1리 교량붕괴등 노후 새마을시설물(소교량)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등 대책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길포장공사 사업비는 계획에 비하여 사업시공 물량이 일정치 않고 단위당 포장단가가 많은 차이가 나며, 현지의 정확한 당초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추궁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결산검사시 무예산 집행 2억8천만원에 대해서 집중 추궁 ○ 자동차세, 종토세, 시장사용료등 군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및 사유추궁 ○ 공유지 임대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지역간 형평 유지와 미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추궁 ○ 평창군의 빈약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수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실적이나 향후계획 ○ 장평 전경대 공유지 무상임대에 대한 향후계획 	
(사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자나 특혜자가 없는지 추궁 ○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제도개선 용의는 ○ 평창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와 위원선정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추궁 	
(환경 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어양식장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현황및 대책에 대하여 집중 추궁 ○ 축산농가및 기업축산으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 	

<p>(가정복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 공설묘지 추진경위및 선정배경, 주민동의, 앞으로 추진대책 ○ 도시화, 산업화 영향으로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 	
<p>(산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홍보등 추진과정에 대하여 추궁 ○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및 활성화 대책 ○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의 선정과정, 투자내역, 소득분석,향후 대책등 ○ 산업과 소관 업무 각종통계수치가 상이한점에 대하여 집중추궁 ○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사업 추진현황 ○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발위주의 위탁영농회사 확대 방안 ○ 92년도 산나물재배 보조사업 능가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분해를 준것이 아닌가에 대해 추궁. 	
<p>(지역 경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가스(L.P.G)판매소의 인허가 기존현황, 판매현황, 휴업증인업소등 관리방안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 고시금액 위반업소 단속 소홀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설치현황과 향후 주정차 시설대책○ 벽지노선버스 운행실태와 문제점, 대책등 추궁○ 평창농공단지 운영상태, 휴,폐업 업체 대책등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어장현황 자료불충분에 대하여 질타○ 송어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근본적 대책및 향후 계획○ 축산폐수 처리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효과등 추궁○ 초지현황 자료를 현지실정과 상이한 통계를 제출한 제출한 사유와 부실초지에 대한 향후 대책○ 진부,장평우시장 운영실태 및 대책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림사업중 속성수(낙엽송)식재로 인한 경제성, 간벌작업 인부임지급등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임도위치선정및 설계과정과 국제트렌스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대책 등 추궁○ 산림조합에 위탁한 사업의 계약등 법적근거 규명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창배수펌프장 설계변경내역및 지연사유 향후대책등 추궁○ 송정택지개발지구에 골재채취허가 사항	

	○ 군도확포장 공사계획과 미포장내역, 향후대책	
(도시과)	○ 주택자금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하여 미수자에 대한 대책등 추궁 ○ 무허가 건축물 현황중 누락된 사항에 대한 대책 ○ 평창상수도 이전 설계용역비 지출등 현재까지 미흡한 사유 추궁 ○ 평창근로자 복지주택 신축공사시 설계변경내역 추궁 ○ 수십년전부터 국.공유지, 하천, 국도유지등에 무허가건축물 현황및대지 불하계획, 임대계약상황등 ○ 송정택지 미보상 내역및 대책	
(민방위과)	○ 일부 읍면배치 소방관이 기능적으로 화재시 소방차 작동미숙등 문제점 지적, 개선요구 ○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누전에 대한 대책	
(보건 의료원)	○ 의료원 운영실태및 수지분석	
(농촌 지도소)	○ 면에 배치된 대농민상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 U.R 대응한 경제성 작물개발등 지역실정에 맞는 발작물 지도계획	

<p>(봉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의 장기개발계획이나 중장기 5개년계획 수립 여부 ○ 면 창고신축시 부지선정과정에서 민원유발 사유 추궁 ○ 군수포괄사업비중 흥정리 교량가설 5,000천원에 대한 사업선정 사유 ○ 제출서류 미흡추궁 (페이지누락, 각종계수 합계 누락, 요구자료누락등) ○ 지방세 미수액에 대한 사유및 향후대책 ○ 마을안길포장의 단위당 금액이 적은 이유 ○ 시장사용료 징수가 부진한 사유 ○ 택시요금의 부당징수에 대한 대책 ○ 한우개량단지 운영실태및 성과 ○ 관내 초지면적과 부실된 초지 현황 ○ 비가림재배 사업의 소득및 전망과 향후 확대계획 ○ 읍면장 포괄사업 선정과정및 개선계획 	
<p>(용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장포괄사업의 선정과 시행하는 경위 ○ 이장및 의용소방대 수당 지급시기가 유동적인 사유 추궁 ○ 관내택시요금의 부당징수 사례를 점검한 실적및 홍보대책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은 고시가격에 의한 판매가 되어야 하나 일부 업소에서 고시가격 미준수사례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사과정 준수및 누락여부 ○ 쓰레기 매립장 현황및 향후처리 대책 ○ 부실초지 현황및 조사내용, 향후대책 ○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복무관리 상태 ○ 면장포괄사업등 각종 공사의 공정이 저조 동절기로 인한 부실방지 대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과정 등 ○ 화재예방에 대한(전기누전) 특별홍보와 대책 	
--	---	--

나.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1.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의 POOL보조금에서 수시 산발적인 보조가 많이 집행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정액보조의 집행은 지양요망
2. 평창관문아취설치물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부 파손된 부분이 미관상 불결하며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수선요망
3. 새마을사업등 소규모 사업시공에 있어서 낙찰업체에서 직접시공을 압하고 사업시행 능력이 없는 업자에게 하청(재도급)을 주어 공사부실률 초래, 향후 방지대책 강구
4. 장평 전경대 사용부지 (군유지) 임대방치로 군세수증대에 결함요소 이므로 임대해제 또는 타용도로 활용방안 강구
5.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방안 강구
6.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시 요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검사를 함으로서 객관성있는 위생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향후 소관부서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방안 강구

- 7. L.P.G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L.P.G 용기구입시 고시가격보다 고가판매 및 배달료과다징수, 용량부족에 대한 대책 강구
- 8. 벽지노선의 교통량 조사는 마을명, 포장현황, 교통량(승차 평균인원)등이 현실과 많이 상이함.
정확한 조사로 주민을 위한 운수행정이 되기를 바람.
- 9. 관내 부실초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로 획기적인 방지대책을 강구
- 10. 종합토지세 미수액에 대하여 (특히 외지인) 특별대책을 강구
- 11.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및 지루함 해소를 위하여 잡지등 홍보물 비치.
- 12. 이장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사기양양 차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13. 택시요금 부당징수료 주민불만을 초래하고 있음.
홍보강화와 특별대책을 강구 추진요망.

다. 건 의 사 항

- 1. 지방자치의 참뜻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있다고 봄
증장기 개발계획에서부터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일부 지역에 편중이 안되도록 기획부서에서 사전조정하여 주기 바람.
- 2.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과년도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 사업추진이나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음.
향후에는 당초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로 가능한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공되도록 대책 강구 바람.
- 3. 노성제행사는 민간주도로 치루면서 읍면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주민으로부터 행사비를 각출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급식비등 경상적인 경비는 줄여 내실을 기하여 주기 바람.
- 4. 평창장학회운영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관내 고등학생에만 적용치 말고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수혜가 가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기 바람.

5. 일선행정의 활력화와 읍면직원 사기양양을 위하여
읍면직원 결원을 조속히 보충시키고 읍면사무소에 여직원이 많이 근무
하므로서 숙직등 종합 행정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읍면여직원의
본청발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기 바람.
6.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등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무실공사방지, 주민화합, 애향심고취의 일환으로 마을개발위원,
명예감독관 지정과 준공검사시 지역출신 의원입회및 사업은 마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바람.
7.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주기 바람.
8. 송어양식장및 축산폐수로 인한 획기적인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맑은물 보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특히 송어양식장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인 우수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영세 송어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대책을 강구 요망
9. 산업화, 도시화에 편승하여 젊은이들은 모두 농촌을 떠나고 노약자만이
남은곳이 농촌실정임.
관내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등 노인복지
대책에 특별한 관심 요망
10. 현재 는 위주의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창군의 특성을
살려 밭위주의 위탁영농회사가 보급되도록 요망
11. 평창상수도 이전문제는 평창읍 주민의 부족한 식수해결등 가장
당면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확정 조기착공되도록 요망.
12. 민방위교육은 농촌실정에 맞도록 농번기를 피하여 교육실시 요망.
13. 4-H육성 경진대회 참석시 회원들의 사기양양차원에서 실비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14. 읍면장 포괄사업 선정은 읍면장고유 권한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출신의원이나 읍면번영회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여 선정될수 있도록
선처 바람.

15. 군유지에 건축한 건물대지가 조기에 불하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
요망.

특히 건물대지분이라도 환지,매각,불하등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

16. 읍면의 향토개발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예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의 운영이 미흡하다고 봄.

향후 본조례가 제기능을 찾아 활성화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망

17. 지방채발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발행을 지양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8. 조례정비는 공포 즉시 추록 발행과 법 미정비로 인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라. 기 타 사 항

○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93. 1. 30까지 의회에 보고

○ 出席委員

- 委員長 金 樂 雲
- 幹 事 朱 泰 元
- 委 員 李 致 玉
- 委 員 李 相 薰
- 委 員 朴 容 泰
- 委 員 郭 文 春
- 委 員 金 鍾 永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辛 教 善

【 議 席 】

○ 議席表 (229 面에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 捺印함.

1992 年 11 月 26 日

委員長

金 樂 

專門委員

辛 叡 